#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6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훈기·복기왕·이정문

박지원 · 조인철 · 정동영

김정호 · 김용만 · 박수현

주철현 · 김원이 · 노종면

박민규 · 황정아 · 조승래

민병덕 · 김남근 · 문금주

최민희 • 황명선 • 박용갑

의원(21인)

#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

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을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하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임명제청을 하여야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

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2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 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2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사의 이사 · 임원 및 직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의4(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추 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사 소속 근로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6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 추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을 "이사장을 포함한"으 로, "9명으로"를 "1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 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을 "이사는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으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중 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개인"을 "개인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 9항) 중 "임기 및 결격사유에"를 "임기에"로, "제10조와 제11조를"을 "제10조를"로 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단,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소속 전체 근로자가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천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제13조의3(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

- 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제5호의3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장의 임면제청

5의3.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11의2. 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 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공사의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사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공사의 이사가 제13조의2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3. 공사의 이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6.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 및 제13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사 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방 송공사의 이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이사 및 집행기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② <u>제12</u> 조의4제2항에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u>를 받아 임명</u> 한다. <후단 신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설&gt;</u>	<u>임면(任免)</u> <u>이 경우 이사</u>
	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
	<u>시하여야 한다.</u>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④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lt;신 설&gt;</u>	⑤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
	<u>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u>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
	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하
	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
	지 임명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u>한다</u> .	<u>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u>
	<u>수 있다</u> .

②·③ (생 략) <신 설>

- ②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 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가 사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제 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 다.

⑥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2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사의 이사・임원 및 직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 견인

- 제12조의4(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이하이 조에서 "추천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가 가 제출한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 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사 소속 근로자의 평가 를 반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 ② 이사회는 <u>방송통신위원회가</u> ② ------<u>이사장을 포함한</u>-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하다.

<u><신</u> 설>

천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 만료 6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 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 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13명으로-----.
- ③ 이사는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 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 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 다.

<신 설>

<신 설>

<u><신</u>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1명
- 4. 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단,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을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에 따른 교접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소속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천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사람 2명. 이 경우 추천하는

<u><신 설></u>

<신 설>

- ④·⑤ (생 략)
- ⑥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td>서 신설>
- ⑦ (생 략)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u>⑦</u>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u>9</u> -----.
- \_\_\_\_\_

-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공개하면 <u>개인</u>·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생략)
-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	
1. (현행과 같음)	
2 <u>개인(공사의</u>	이시
및 임원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u> </u>	<u>저</u>
<u>10</u> 조를	

- 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
    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 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제13조의3(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11. (생략)

<신 설>

12. (생략)

② (생략)

<u><신 설></u>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_\_\_\_\_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의 임면제청

5의3.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 장의 임명동의

6.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 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공사 의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 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공사의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사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공사의 이사가 제13조의2 각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3. 공사의 이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5.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방송문
  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
  화진흥회 또는 방송문화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6.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u>경우</u>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 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